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3호

「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 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30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지원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다세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.
-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, 지원주기 등을 상향조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 변경(안 제3조, 제4조)
- 지원대상 : 아파트 및 연립주택 ⇒ 아파트,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 - 지원상한율 : 80% ⇒ 90%
 - 지원주기 : 5년 ⇒ 3년
- 나. 세대수별 지원상한액 및 지원비율 상향조정 (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안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